

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9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1. . 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지정문화재외에 보존 및 활용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또는 시설물을 문화재로 등록하여(등록문화재) 적극 보호하도록 하였던 바, 등록문화재의 소유자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통하여 문화재 보존·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문화재 보존의지를 제고하기 위함.

주요골자

- 문화재보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(안 제10조제2항 신설).

개정조례안 : 별첨

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- 문화재보호법 제42조 (문화재의 등록)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01. 9. 5. ~ 9. 25.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 : 별첨

-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 시달 (경기도)

안산시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

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일반적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소관 실·과		시 세 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시세과장 이성운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세정담당 원운희
	담당자 성명·전화	배순철 (행정 2191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하여는 재산세·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(생략) 3. (생략)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10조(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)①— -----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<p>②<u>문화재보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</u></p>